The PLATINUM
더 플래티넘 파인에비뉴

※ 본 마케팅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릅니다.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657-1277)

주택유형	해당지역	거주의무기간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청약1,6개월 이외 계속 거주 (2025.10.29. 이전에는 계속 거주)	청약1,6개월 이외 3년 거주자 및 전매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있음	6개월	있음	있음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29(수)	2026.05.11(월)	2026.05.12(화)	2026.05.13(수)	2026.05.21(목)	2026.05.22.(금) ~ 2026.05.25(월)	2026.06.04.(화) ~ 2026.06.04.(목)

- 2순위 청약접수는 청약 해당지역 1순위 접수일에 청약접수 마감되지 않은 해당지역 및 청약 해당지역 외 경기도 지역 청약자 접수일에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 사업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또는 대상지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해당지역 외 경기도 지역 청약자 접수일에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 사업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또는 대상지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외 경기도 지역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청약이 별도로 적용 중소하기 위하여 국외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체류 기간과 상관 없이 거주기간 3년 적용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없음	6개월	없음	없음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6.11.(목)	2026.06.12.(금)	2026.06.13.(토)	2026.06.21.(목)	2026.06.26.(금)	2026.06.27.(토) ~ 2026.06.29.(월)	2026.07.08.(수) ~ 2026.07.10.(금)

- 2순위 청약접수는 청약 해당지역 1순위 접수일에 청약접수 마감되지 않은 해당지역 및 청약 해당지역 외 경기도 지역 청약자 접수일에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 사업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또는 대상지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해당지역 외 경기도 지역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청약이 별도로 적용 중소하기 위하여 국외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체류 기간과 상관 없이 거주기간 3년 적용

1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9.(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사항은 본 모든 내용이 미반영되어있으며, 향후 최종승인(준공)시 승인조건 및 승인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호에 의거 '세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의 청약자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세대'를 이루어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다.
  1. 세대원 중 1명이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
  2. 세대원 중 1명이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세대원 중 1명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세대원 중 1명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세대원 중 1명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시원(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의 분양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1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도시재생사업시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1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사업시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1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라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바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아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자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차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카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타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파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하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거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2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너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더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러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머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버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서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어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저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처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커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3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터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퍼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허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고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도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로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모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보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소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4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오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조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초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코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토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누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두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5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루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무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부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후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파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하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거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6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너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더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러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머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버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서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어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저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처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커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7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터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퍼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허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고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도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로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모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보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소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8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초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코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토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누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두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루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무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9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부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후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파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하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거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너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더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0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러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머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버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서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어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저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처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커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터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퍼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1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허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고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2.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도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3.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로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4.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5.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호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6.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구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7.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누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8.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두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29.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루목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30.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축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1호무목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131. 세대원 중 1명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